



즉시 배포용: 2020년 6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치안 유지 활동 개혁 법안에 서명

스탯 법은 법원이 모든 낮은 수준의 범죄에 대한 인종 및 기타 인구 통계 자료를 집계하고 게시하도록 요구

주 및 현지 법 집행 공무원이 무기를 발포 시 6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요구

경찰관이 구금 중인 개인에게 의료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주의를 제공하도록 요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치안 유지 개혁 법안에 서명하여 주 및 지방 법 집행 공무원이 무기를 발포할 때 6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요구(S.2575-B/A.10608)하며, 법원이 모든 낮은 수준 범죄에 대한 인종 및 기타 인구 통계 자료를 집계하고 공개하도록 요구(S.1830-C/A.10609)하고, 경찰관이 구금 중인 개인에게 의료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주의를 제공하도록 요구(S.6601-A/8226)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개혁은 이 주와 나라에서 오랜 시간 지연되었으며, 뉴욕은 다시 한번 길을 선도해 형사 사법과 치안 유지 시스템에 존재하는 체계적인 차별을 끝내기 위한 진정한 변화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개혁은 법 집행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망가지고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소수자 지역사회가 직면한 많은 불의를 정상화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경찰 통계 및 투명성 법(Police Statistics and Transparency Act, STAT)(S.1830-C/A.10609)

경찰 통계 및 투명성 법, 즉 스탯법(STAT Act)은 법원이 모든 낮은 수준의 범죄에 대한 인종 및 기타 인구 통계학적 자료를 집계하고 게시하도록 요구하며, 여기에는 경범죄와 위반이 포함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고 매월 갱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은 또한 경찰 부서에서 체포 관련 사망을 형사 사법 서비스부(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에 보고하고 체포 관련 사망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주지사와의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경찰에 대한 Barack Obama 대통령 태스크포스의 권고인 경찰 통계 및 투명성 법은 법 집행 기관이 낮은 수준의 체포에서 구금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구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우리는 마침내 법 집행 기관이 흑인 및 라틴계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차별적인 치안 관행을 확인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오늘 서명으로, 이 역사적인 법안은 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통과를 도와주신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 Jamaal Bailey 상원 법률 위원회(Senate Codes Committee) 위원장, Carl Heastie 하원 의장과 하원에서 지지를 보내주신 Joe Lentol 의원, 흑인, 푸에르토리칸, 히스패닉 및 아시아 간부회의(Black, Puerto Rican, Hispanic & Asian Legislative Caucus)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Eric Garner의 어머니인 Gwen Carr를 지원하게 되어 영광이며, 이 분은 개인적으로 경찰 스탯법의 통과 운동을 위해 울버니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는 Carr 여사의 아드님을 기리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합니다."

Joseph R. Lento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 뉴욕 주법에 대한 모든 개혁을 후원하여 법 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일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주지사께서 50-a의 폐지에 서명하며 시작되었으며 이제 스탯법이 통과됩니다. 투명성은 정부의 모든 부문에 필요합니다. 저는 스탯법의 주요 후원자가 되어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진행시키려고 노력한 5년의 세월 후에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무기 발포 보고(S.2575-B/A.10608)

이 새로운 법은 사람이 무기의 총알에 피격되었을 수 있는 경우, 근무 중 또는 근무 외 시간에 자신의 무기를 발포하는 법 집행 공무원 또는 보안관은 구두로 6시간 이내에 자신의 상관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사건 후 48시간 내 서면 보고서를 준비 및 제출해야 합니다.

Jamaal T. Baile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주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법으로 법 집행 공무원은 무기를 발포하고 개인이 피격되었을 수도 있는 때마다 6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 나은 대중의 신뢰를 얻고, 책임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와 경찰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 내에서 이러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하원에서 지지해주신 N Nick Perry, Andrea Stewart Cousins 대표, Heastie 의장께 감사드립니다."

Nick Perr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은 경찰 직권 남용 행위로 목숨을 잃은 Jayson Tirado에게 바쳐야 합니다. 범죄 의도가 있던 경찰관 Sean Sawyer가 자신의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 교부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 Tirado의 생명을 앗아갔을 때, Sawyer는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그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번 제정으로 판사, 배심원 및 사형 집행인이 된 듯 행동하는 이런 종류의 무자비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다음 공무원이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지사과 하원 의장께서 이를 주법으로 제정하는 데 있어 보내주신 주요 지원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구금 중인 개인에게 의료 및 정신 건강 주의 제공(S.6601-A/8226)

이 새로운 법은 경찰관, 보안관 및 기타 법 집행 대리인 및 단체가 구금되는 모든 개인에게 의료 및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경찰은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하고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거나 보살핌이 부족하여 부상이 악화된 모든 사람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Jamaal T. Baile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법안에 서명해주신 주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법안은 체포된 개인이 요구할 경우 법 집행관이 의료적 주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구금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개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례에서, 이러한 개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 지원이 거부되거나 너무 지연되어 개인이 불필요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일부 사람의 상태에 대한 무관심 또는 방치도 의료적 관심에 대한 간청을 무시당한 **Andrew Kearsse**의 사례와 같은 무의미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하원에서 이를 지지해주신 **Nathalia Fernandez** 하원의원과 **Andrea Stewart Cousins** 대표 및 **Heastie** 의장께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Nathalia Fernandez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 집행 공무원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맹세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방치로 인해 구금 중에 사망했습니다. 정부로서 우리는 법 집행 공무원들이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유언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Andrew Kearsse** 및 구금 중 불필요하게 사망한 이들을 기억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